

Piketty(2014)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도 심화와 조세정책적 대응방안

I. 서론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hrut@kipf.re.kr)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물류가 보편화되고 지속적 성장이 의문 시되면서 장기적 침체가 우려되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라는 현재의 정치경제시스템이 과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¹⁾ 특히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한 경제 내의 총소득 중 최상위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top 0.1%, 1%, 10% income share)에 대한 국가별 연구를 통해 소득과 부의 분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최상위 소득비율을 통해 파악된 불평등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변화패턴이 나타남에 따라 성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에 서조차 선거공약으로서 조세정책 발표와 조세개혁 보고서들이 범람하게 된다.

OECD는 영어사용권(예: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등), 대 유럽대륙권(예: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군별로 나누었을 때 전자 국가군에서는 후자 국가군보다 상위 소득집중도의 증가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특징적 사실들(stylized facts)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위 소득계층으로의 소득집중도 현상은 소득원천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자본소득보다는 근로 및 사업소득 쪽에서 집중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이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 기업 고위직 임원이나 금융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증가가, 상위 소득집중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소득집중 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오바마 1기 행정부 말기에 Buffet Rule 등의 발표를 통해 최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후보의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70%로 올리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OECD는 성장잠재

1) Barro(1997), Arcemoglu and Robinson(2012)

력을 훼손하거나 경제적 비효율성을 높이지 않기 위해, 고소득계층에 대한 최고한계세율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평균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각종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3월 피케티(Thomas Piketty)의 *Capital in the 21 Century*(이하 ‘C21C’라 칭함)가 발간되어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C21C 발간 이전에도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연구들은 넘쳐날 정도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큰 줄기로만 살펴보아도 대체로 아래의 3~4 갈래로 나눌 수 있다.

- OECD의 2008년 및 2011년 보고서²⁾ 및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웹사이트
- Anthony B. Atkinson,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Wolff 등의 논문들
- Luxemburg Income Study 및 Review of Income and Wealth 학회지 등
- Capgemini(and Merrill Lynch or RBC), Frank Knight & Citi Group 등, Global Financial Group 내 Worldwide Wealth Management Division 내 보고서 등³⁾

본고에서는 이들 중 가장 첫 번째인 OECD의 연구와 피케티의 연구 간 큰 차이에 대해 부연 설명해 보고자 한다. 후자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원인으로 자본소유의 집중에 따른 자본소득 쪽에 초점을 맞춘 반면, OECD 연구보고서는 고용노동사회정책

“
**OECD 연구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성 심화문제를
 자본 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대가라는
 2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최근 30년간의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했다.**
 ”

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이 중심이 되어 불평등도 심화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⁴⁾ 임금 등 근로소득 쪽에서의 불평등성 심화와 그 원인 규명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성 심화문제를 자본 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대가라는 2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최근 30년간의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기도 한다.

OECD(2011)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난 100년 중 첫 75년간은 총소득 중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하락하다가 1980년대 이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추세를 설명하면서, 미국 등 몇몇 회원국들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상의 소득을 구성하는 노동소득(Salaries),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자본소득(capital income), 자본이득(capital gains) 등 그 원천별로 구성요소 분석을 했을 때 기업의 CEO, 금융권 고액연봉자들이 최근 25년간 더 많이 포함되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⁵⁾

이에 본고는 피케티가 C21C에서 제기한 부의 불평등도 심화 문제를 OECD 보고서상의 소득의 불평

2)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2008, Paris.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2011, Paris.
 3) 한 경제 내의 최상위 부자들의 분포에 대해서는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영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HNW(High Net Worth Individual)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표 1>을 참조할 것
 4)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DB 사용
 5)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나,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함

“
**피케티 연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자본소유자인
 최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

등도 심화연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불평등도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글로벌 부유세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 부의 결합분포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온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 Capital의 주요 내용들: 소득 및 부의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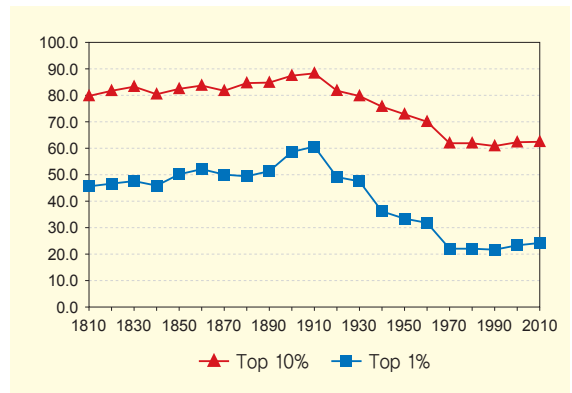
한 개인이나 가구의 (1년간의) ‘소득’이라는 유량 변수와 (한 시점에서 평가한) ‘부’라는 저장변수를 분석할 때 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실증적 (empirical) 분석에서 자료이용 가능성이 높은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러다 부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된 한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구단위의 부에 대한 동태적 연구(household wealth dynamics)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자 간의 인과관계로 연구초점이 이전되는 발전과정을 겪게 된다. 피케티 역시 그의 C21C 발간 이전에는 주로 미국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성(Income Inequality: 이하 ‘II’라고 칭함) 문제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다가 II 심화의 원인을 찾으려 보다 장기간의 추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소득보다 더 오래전 과거로 돌아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프랑스에는 19세기 초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1791년부터 상속증여세 면제혜택이 귀족들에게 없어지고 등기소

내에 보관된 자료를 통해 재산소유 상황이 노출되게 된다. 18세기 사망자들의 재산을 통해 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산가들의 자산분포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을 상속재산 배율법(estate multiplier method)이라고 하는데 <부록>에 소개되어 있다.

[그림 1]은 1810년부터 2010년까지 200년의 기간 동안 프랑스의 가구단위 부의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한 가구를 추적한 panel 자료는 아니며 각 연도별 횡단면 미시자료(cross-section micro data)들을 기초로 계산한 집계치를 연결한 그림이다. 상위 10% 및 최상위 1% 부유층 가구들이 총 부의 80% 이상과 45% 이상을 각각 차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1910년부터 1970까지의 기간 동안 몰락하여 1970년 이후에는 각각 60% 및 20%대에서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그림 1] 프랑스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단위: %)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p.340, TS10.1의 [Figure 10.1] 인용

피케티 연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서 자본소유자인 최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세계대전이나 대공황과 같은 자본에 대한 파괴현상이 없는 한, 최상

위 1% 또는 0.01% 소득 분위자들은 대부분 자본소유자들로서 소득의 대부분이 저축되고 재투자되며, 또 자손들에게 상속되므로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성(inequality)은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21C에서 피케티는 과거의 소득 불평등성 심화가 장기적 축적의 결과, 부의 불평등성(Wealth Inequality: 이하 'WI'로 칭함) 심화로 이어진다는 기존 사고에 추가하여, 소득 불평등성의 악화는 WI 때문에 발생한다는 반대방향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단한 이론적 모형으로서 2가지 기본법칙이 나와 있다.

자본주의 제1기본법칙 $\alpha = r \times \beta$ (α : 국민소득 대비 자본소득비율(Capital income/Total income), r : 평균 자본수익률(Capital income/Capital stock), β : 국민소득 대비 자본스톡비율(Capital stock/Total income))

$$\text{자본주의 제2기본법칙 } \beta = \frac{s}{g}$$

(g : 성장률($\frac{\dot{Y}}{Y}$), s : 저축률)

C21C에서는 제2기본법칙을 통해 불평등도의 심화를 국가별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제1기본법칙을 통해 자본소득의 비율, 즉 한 경제 내 소득 중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비율인 α 가 장기간에 걸쳐 U자형 변화패턴을 보였음을 설명하면서, 자본이 축적되면서 β 가 상승하고 성장률(g)이 하락하면서 자본의 소유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었던 나라들의 사례들을 통해 그의 간단한 이론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C21C의 제5장인 장기적인 자본/소득비율에서 피케티는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이라고 부르는

$\beta = \frac{s}{g}$ 관계식이 40년(1970~20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

“
피케티는 과거의 소득 불평등성 심화가 장기적 축적의 결과, 부의 불평등성 심화로 이어진다는 기존 사고에 추가하여, 소득 불평등성의 악화는 부의 불평등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반대방향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동 수식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솔로(Robert Solow)의 자본(K) 및 노동(L) 2-생산요소로 산출물(Y)을 생산하는 Cobb-Douglas형 생산함수의 경제발전모형을 통해 보다 손쉽게 설명할 수 있다. $y = k^\alpha$ 와 $\dot{k} = sy - (n + \delta)k = 0$ 로 구성되는 Solow 동태모형에서 1인당 소득(y)과 자본집약도($k = K/L$)가 변화하지 않는 정태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이 달성되는 상태가 바로 피케티가 상정하는 장기적 자본소득비율 관계식이 성립하는 상태이다. 즉, $s = (n + \delta) \frac{k}{y} = (n + \delta) \frac{K/L}{Y/L} = (n + \delta) \frac{K}{Y}$ 가 되므로 한 경제 내의 총(민간)자본스톡의 소득배율인 K/Y 는 장기적으로 $s/(n + \delta) = s/\beta$ 로 수렴하는데, 여기서 β 라는 성장률은 위의 식들이 모두 인구 1인당으로 표시되었으므로 감가상각률(δ)과 인구증가율(n)의 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케티는 만일 어떤 경제의 저축률이 12%로 주어졌는데 성장률이 2%가 아닌 1.5%로 하락하면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은 6년(=12%/2%)이 아닌 8년(=12%/1.5%)으로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성장률이 2%가 아닌 3%로 상승하면 자본량은 국민소득의 4년(=12%/3%)치에 해당하도록 조정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예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1.5~2% 증가하면서 인구

“
**상위 소득자 10% 계층에는
 여전히 고액연봉의 근로소득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1%로 국한하게 되면
 이들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소득이므로
 1970년대 이후 다시
 상위 10%의 소득 불평등도 증가는
 대부분 최상위 1% 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

증가율은 0이어서 총성장률이 1.5~2%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저축률이 12%일 때 6~8년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자본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다 자본집약적인 경제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본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소득비율이 높아져서 불평등도가 심화하게 된다.

과거 피케티는 사에즈(Emmanuel Saez)와 공동으로 미국의 연방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 이후 1998년까지의 소득 불평등도를,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분석한 Piketty & Saez(2003) 논문을 통해 지적하였다. 상위 소득자 및 상위 임금소득자 비중은 장기간에 걸쳐 'U자 모양의 변화'를 보이는데 1920년 후반 세계 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본소유자들이 겪은 대규모 충격은 상위 자본소득자들에게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후에도 높은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 제도 때문에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도록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위 노동소득의 경우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대체로 일정비율을 유지하다가 전쟁기간 중 급락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쟁 전 수준보다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위 소득계층 구성원들이 과거의 자본소득자(rentiers)에서 고액 노동소득자(working rich)로 바뀌었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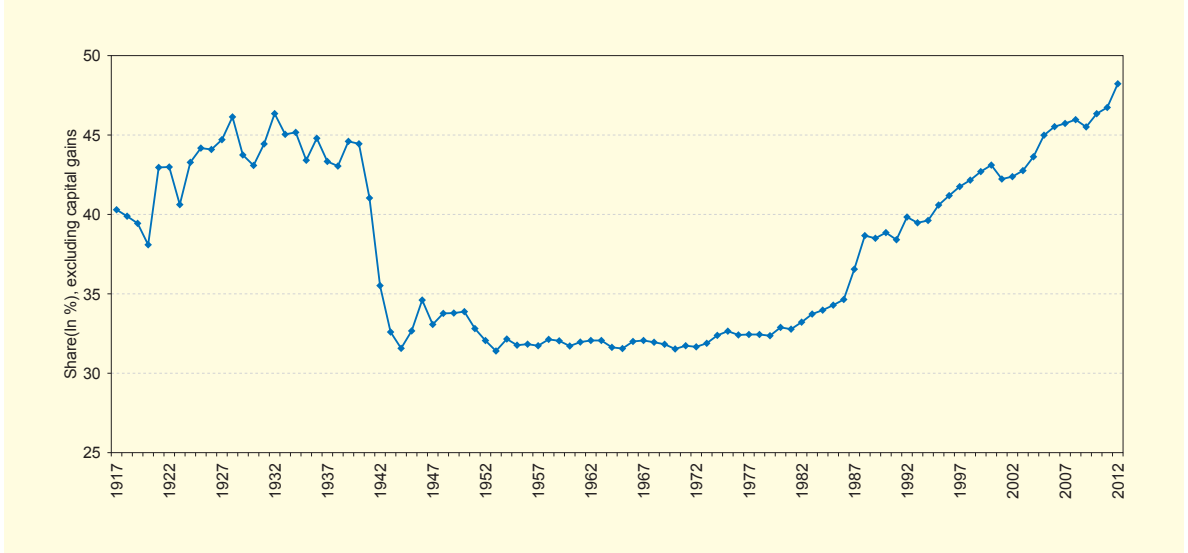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소득분위 상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1930년대 초 45% 수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2%로 낮아졌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특히 최고소득세율을 크게 낮춘 1986년 세법개정 이후 다시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반부만 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교수가 제시한 결론인 '경제성장에 따라 불평등도가 감소한다'는 가설이 지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시장자본주의의 내생적 모순과 한계로 자본수익률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위안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이 쿠즈네츠 교수의 곡선을 믿었던 것이다. 반면 피케티는 쿠즈네츠가 주로 1950년대 및 1960년대 자료만 보았으므로 U자를 거꾸로 한 모양의 곡선 오른쪽이 60년대 말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상위 10%를 더 세분화하여 [그림 3] 및 [그림 4]에서와 같이 상위 1%나 최상위 0.1% 계층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소득점유율의 1970년대 이후 변화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을 피케티는 강조하였다. 상위 소득자 10% 계층에는 여전히 고액연봉의 근로소득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1%로 국한하게 되면 이들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소득이므로 1970년대 이후 다시 상위 10%의 소득 불평등도 증가는 대부분 최상위 1% 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이는 OECD(2011)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고소득자 계층을 1% → 0.1% → 0.01%로 좁혀나갈 때 해당 고소득자의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자본이득(capital gains), 자본소득(capital income),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특징의 발견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림 2] 미국의 소득 상위 10% 집중도의 장기적(1913~2012)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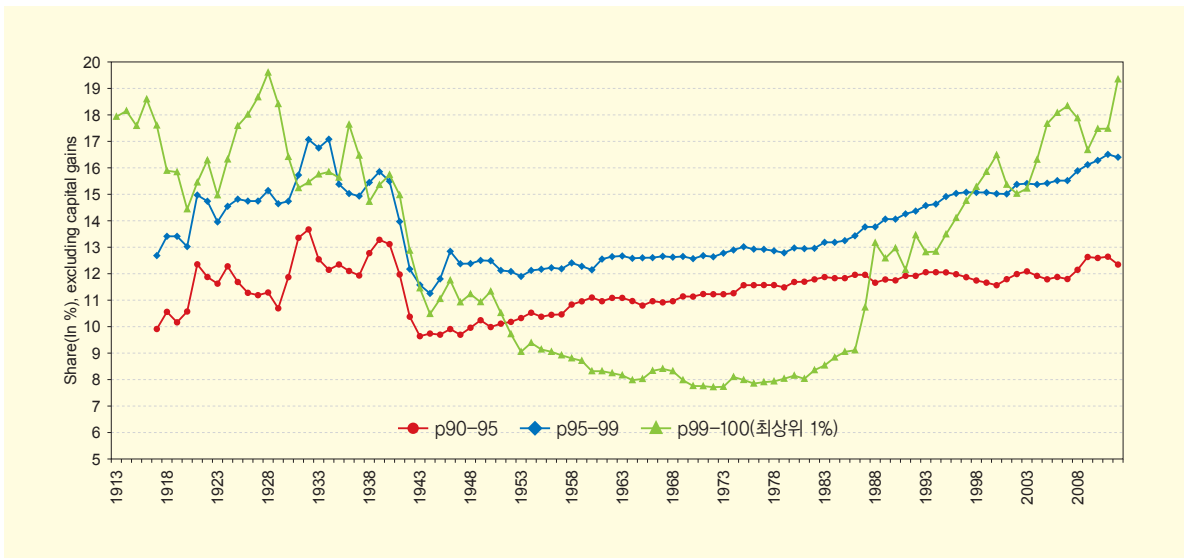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iketty & Saez(2001)의 [Figure I] The Top Decile Income Share(1917~1998)를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에 의거하여 2012년 까지 update

[그림 3] 미국의 소득 상위 계층별 소득집중도의 장기적(1913~2012)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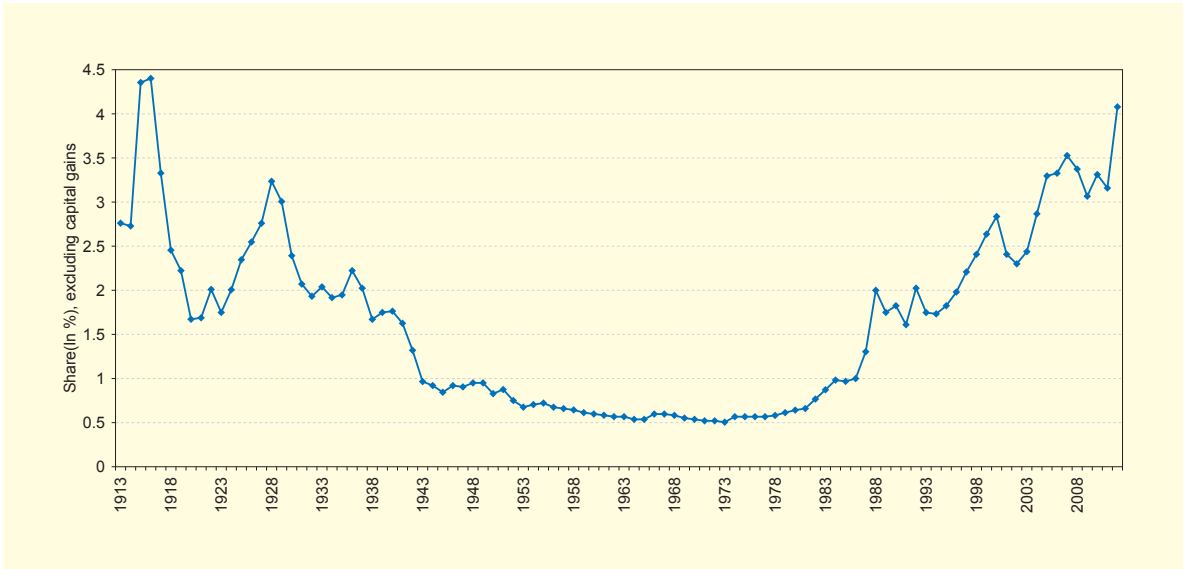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iketty & Saez(2001)의 [Figure II] Income Shares of P90-95, P95-99, and P99-100(1917~1998)를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에 의거하여 2012년까지 update

[그림 4] 미국 최상위 소득계층(0.01%)의 소득집중도의 장기적(1913~2012)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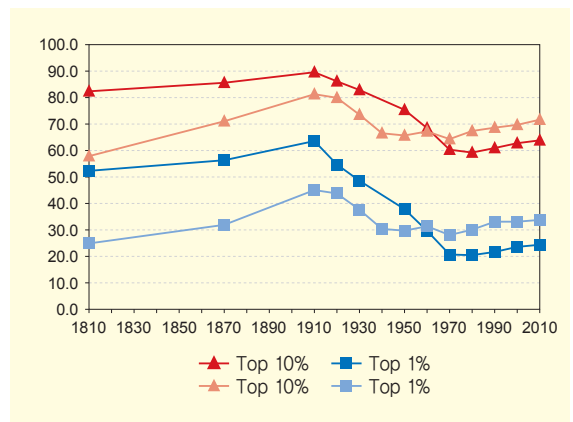
자료: Piketty & Saez(2001)의 [Figure III] The Top 0.01% Income Share(1917~1998)를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에 의거하여 2012년 까지 update

[그림 5]는 181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200년이 라는 장기간 동안 부의 집중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 또 유럽과 미국 간에 지역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의 상위계층 집중도는 상위 1%이건 상위 10%이건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가 1960년대 들어 역전되어 대략 10%p 정도 유럽의 부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케티는 영국, 스웨덴, 미국에 대해서도 수백 년 된 세금신고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그림 6] 내지 [그림 8]과 같은 부의 집중도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의 최상위 1% 계층 집중도는 1910년에서 1970년 기간 중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각각 50~60%, 40~60%, 50~70% 수준에서 20% 이하, 20~25%, 20~30%대로 반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유럽과 미국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 (1810~2010)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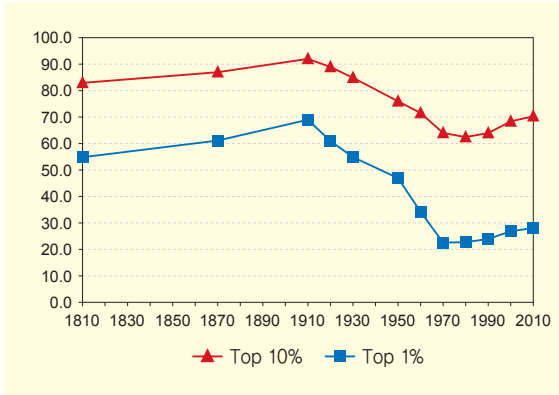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p.349, TS10.6의 [Figure 10.6] 인용

[그림 6] 영국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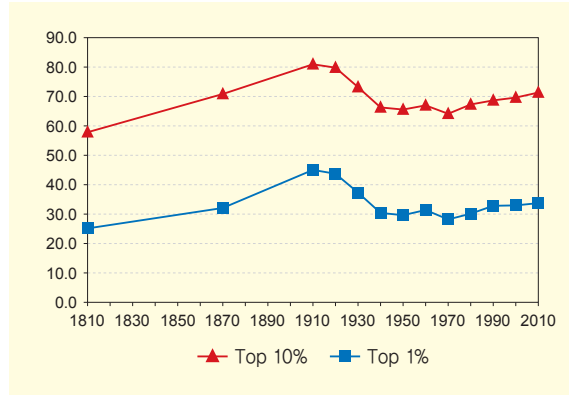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p.344, TS10.3의 [Figure 10.3] 인용

[그림 8] 미국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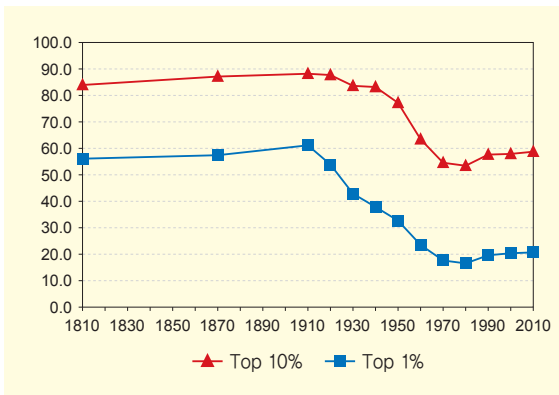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p.348, TS10.5의 [Figure 10.5] 인용

[그림 7] 스웨덴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단위: %)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p.345, TS10.4의 [Figure 10.4] 인용

III. Piketty(2014)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관점: 자료문제 및 정책대안 실효성

C21C의 미국 내 발간 이후 2달여 동안의 주요 언론의 서평 및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논평에서 드러난 두 가지 비판적 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로 <부록>에는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Economist* 등 세계 유수한 일간지 등에서 피케티의 C21C에 대한 신간 서평 및 평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피케티가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백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소득 및 부의 집중을 실증 분석 한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지만 그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분석자료에 대한 비판: *Financial Times* 기사를 중심으로

C21C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피케티가 15년간 정리한 20여 개 국가의 수백 년간의 데

이터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C21C에 쓰인 통계자료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Financial Times*(이하 'FT)에서는 피케티가 사용한 분석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원자료를 잘못 인용하였다는 비판이다. 피케티는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를 보기 위해 Waldenstrom(2009)⁶⁾의 원자료로 참고하였지만,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C21C의 통계자료와 그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표 1>은 원래 자료인 Waldenstrom(2009)에 실린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 및 상속세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20년도 스웨덴 상위 10%, 1% 부의 집중도는 각각 음영으로 표시된 91.69%, 51.51%이지만 <표 2>의 피케티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각각 87.7%, 53.8%로 원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C21C에 서술된 영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도는 71%이지만 영국 통계청에 기록된 해당 수치는 44%밖에 되지 않는다.

<표 2>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

(단위: %)

(Share of the top x% wealthiest in the total wealth)	Sweden		
	Top 10%	Top 1%	Top 0.1%
1810	83.9	55.9	
1870	87.2	57.3	29.6
1910	88.2	61.1	29.4
1920	87.7	53.8	
1930	83.6	42.8	
1940	83.2	37.7	17.7
1950	77.3	32.8	9.7

자료: <http://piketty.pse.ens.fr/en/capital21c2>, the set of spreadsheet files (xls), Table S10.1 재인용

<표 1>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 및 상속세

Year	Net worth (net marketable wealth)									
	Wealth tax data, market values					Estate tax data, tax values				
	P90-100	P95-100	P99-100	P99.9-100	P99.99-100	P90-100	P95-100	P99-100	P99.9-100	P99.99-100
1873						88.34	81.19	60.46	35.6	5.75
1874						85.82	77.35	52.82	24.23	4.41
1875						85.83	77.49	54.18	24.46	6.79
1876						86.14	77.66	55.69	23.15	7.4
1877						85.99	77.39	54.07	23.55	5.6
1906						87.38	78.37	57.75	26.14	4.36
1907						88.32	79.88	61.29	31.7	11.19
1908	86.04	76.17	53.79	28.13	13.64	88.15	79.44	61.1	27.01	3.57
1920	91.69	79.25	51.51	25.37	9.6					
1930	89.49	77.35	50.05	22.35	9.23					

자료: Waldenstrom, *Lifting All Boats?*, p. 120 Table3, A1 재인용

6) Waldenstrom(2009)의 p. 120, Table3, A1

둘째, 국가별 대표수치를 제시함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표 3>은 피케티가 공개한 자료의 일부분인데 유럽의 부의 집중도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적은 인구의 스웨덴에 대한 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FT는 지적하였다. 계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각 나라의 해당 수치를 더하고 단순 평균한 수치를 유럽의 수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인구는 영국, 프랑스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단순평균을 통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로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0년도 미국 상위 1% 수치에 2% 포인트를 더한 것이나, 영국 상위 1%에 임의적인 수치를 더하여 상위 10%를 구한 것⁷⁾ 역시 이에 대한 설명

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출처가 통일되지 못하고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냈다는 비판까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주로 가구의 횡단조사 자료를 이용한 반면, 영국의 데이터는 재산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피케티가 주장하는 불평등도 정도를 더욱 심화시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에는 재산세 데이터가 전체 부의 불평등도를 추정하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안내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케티는 해당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데이터 어디에도 1910년과 1950년에 해당하는 수치가 없는데, 피케티는 상위 1%에 36%를 더하여 미국 상위 10% 부의 집중도 수치를 만들어냈다. FT는 이러한 잘못된 방법들이 피케

<표 3> 유럽과 미국의 부의 집중도 데이터와 계산식

O12		fx =(B12+F12+L12)/3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4		Franc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Sweden			Europe		
5	(Share of the top x% wealthiest in the total wealth)	Top 10%	Top 1%	Top 0,1%	Top 1% (Paris)	Top 10%	Top 1%	Top 0,1%	Top 10%	Top 1%	Top 0,1%	Top 10%	Top 1%	Top 0,1%	Top 10%	Top 1%	Top 0,1%
6	1810	79.9%	45.6%	17.1%	53.7%	82.9%	54.9%		58.0%	25.0%		83.9%	55.9%		82.2%	52.1%	
7	1820	81.8%	46.7%	19.0%	59.0%												
8	1830	83.2%	47.5%	17.1%	52.0%												
9	1840	80.4%	46.0%	15.5%	52.6%												
10	1850	82.4%	50.3%	19.4%	58.6%												
11	1860	83.7%	52.0%	18.3%	55.1%												
12	1870	81.8%	50.4%	18.3%	55.7%	87.1%	61.1%		71.0%	32.0%		87.2%	57.3%	29.6%	85.4%	56.2%	
13	1880	84.6%	49.5%	21.1%	61.9%												
14	1890	84.7%	51.1%	20.2%	58.2%												
15	1900	87.3%	58.7%	28.1%	66.1%												
16	1910	88.5%	60.5%	29.0%	70.7%	92.0%	69.0%		81.1%	45.1%	24.8%	88.2%	61.1%	29.4%	89.5%	63.5%	
17	1920	81.7%	49.2%	23.1%	60.0%	89.0%	61.0%		79.7%	43.7%	22.9%	87.7%	53.8%		86.1%	54.7%	
18	1930	80.0%	47.4%	22.4%	54.8%	85.0%	55.0%		73.4%	37.4%	20.1%	83.6%	42.8%		82.8%	48.4%	
19	1940	75.8%	36.3%	13.7%	52.4%				66.4%	30.4%	13.5%	83.2%	37.7%	17.7%			
20	1950	72.8%	33.4%	12.1%	38.9%	76.0%	47.2%		65.7%	29.7%	12.3%	77.3%	32.8%	9.7%	75.4%	37.8%	
21	1960	69.9%	31.9%	11.5%	35.3%	71.5%	33.9%		67.0%	31.4%	13.4%	63.2%	23.4%	8.2%	68.2%	29.7%	
22	1970	62.0%	22.0%	7.0%	25.5%	64.1%	22.6%		64.2%	28.2%	11.5%	54.7%	17.7%		60.3%	20.8%	
23	1980	61.8%	22.0%	6.7%	25.0%	62.6%	22.7%		67.2%	30.1%	12.4%	53.4%	16.5%		59.3%	20.4%	
24	1990	61.0%	21.7%	6.4%	24.2%	64.0%	24.0%		68.7%	32.9%	13.9%	57.7%	19.5%		60.9%	21.7%	
25	2000	62.1%	23.5%	7.0%	26.2%	68.5%	27.0%		69.7%	33.1%	14.4%	57.8%	20.5%	6.7%	62.8%	23.7%	6.7%
26	2010	62.4%	24.4%	7.2%	27.2%	70.5%	28.0%		71.5%	33.8%	14.7%	58.8%	20.7%		63.9%	24.4%	

자료: <http://piketty.pse.ens.fr/en/capital21c2>, the set of spreadsheet files (xls), Table S10.1 인용

7) <http://piketty.pse.ens.fr/en/capital21c2>, the set of spreadsheet files (xls), 각각 TS10.1 Details US, TS10.1 참고

“
**로버트 실러는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자산의
 지역적 범위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부유세는 조세가 갖추어야 할 시간적 형평성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저축에 대한
 억제라는 부작용 문제를 강조한다.**
 ”

티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였
 다며 방법론과 분석 자료에 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
 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2.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효과성 측
 면: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대한 비판**

2013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실러(Robert J. Shiller) 교수는, 피케티의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가 여러 나라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 이슈를 제대로 제기했지만 그가 제시한 해법이나 정책적 대응방안들 중 전 세계 단위의 부유세 부과는 지극히 실행 가능성이 낮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 자신의 저서 *The New Financial Order: Risk in the 21st Century*에서 제안한 불평등성 보험(Inequality Insurance)이 불평등도 악화 및 부의 집중을 막는, 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⁸⁾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실러는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자산의 지역적 범위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부유세는 조세가 갖추어야 할 시간적 형평성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저축에 대한 억제라는 부작용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시점에 도입되건 도입시점 이전까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투입된 과거의 노력이나 근로활동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과세한다는 불공평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퇴자가 젊었을 때 근검절약하여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에 대해 나중에 부유세로 세금을 부과를 하여 그 세수가 저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타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출된다면 저축활동에 징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유세가 도입될 줄 알았더라면 매년 소득 활동을 한 후 소득세만 내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하여 부를 축적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소비에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소비뿐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아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통해 자식들에 대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시켜 부유세를 회피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실러는 자신이 주장하는 ‘불평등성 보험(inequality insurance)’ 정책이 불평등성이 심화되어 재정적 수준에 이르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부유세 부과보다 더 나은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불평등성 보험은 미래에 불평등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사전에 정부가 법제화해 놓는다는 것이다. 민간의 보험 계약처럼 사전에 위험(risk)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어 이들 최고 부유층들이 정치적 이권 활동을 통해 그들의 부를 공고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위험을 보험의 원리를 사용하여 소득세 쪽에서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⁹⁾

8) Shiller, "Inequality Disaster Prevention," May 14, 2014 Project Syndicate: The World's Opinion Page.

9)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Shiller · Burman · Rohaly(2006)와 Shiller · Ayres · Edlin(2011)에서 밝히고 있음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는 OECD 보고서 등 많은 연구를 통해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총소득 비중(top income shares)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20세기 내내 하락하는 장기적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부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시간적 추세(trend)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전반부의 75년간 하락추세를 설명하는 원인들로 두 차례 세계대전에 의한 대량의 자본파괴, 전쟁기간 중의 인플레이션 및 가격통제, 1930년 세계공황에 따른 부의 붕괴, 누진적 개인소득세의 강화 및 상속증여세 확대를 통한 개인 부의 축적 억제효과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후반부 30년간의 고소득자 소득비중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고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상승현상을 보인 미국을 포함하여 주로 고소득 근로자(working rich)가 받는 고용관련 소득과 사업소득에서의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피케티의 단독 또는 공저자 연구논문들은 이미 과거 OECD 보고서들에서도 많이 인용되었지만, 2014년 발간한 그의 C21C 신간이 기여한 바는 소득보다는 부(wealth)에 초점을 맞추어 부의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원인이 자본소유의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18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속세 자료에 기초하여 수백 년 동안의 자본소유 집중도 변화추이를 제시하면서 유사한 방법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의 자본소유 집중도를 국제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대비하여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자본수익률이 누적된 결과, 부의 불공평성 심화를 설명한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부의 불평등도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글로벌 부유세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란

“
전 세계를 지역단위로 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만 부 및 소득불평등도 완화 목적의 정책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과거 부유세를 부과했던 각종 문제점들 때문에 폐지했던 실패 경험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이나 직장 출퇴근의 필요성이 없어져 저세율 부과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mobility)이 높은 은퇴자들 때문에 부유세 부과는 몇몇 국가들만이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를 지역단위로 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만 부 및 소득불평등도 완화 목적의 정책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과거(국가단위의) 부유세를 부과했던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 국가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문제점들 때문에 폐지했던 실패 경험 때문에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래 국가단위 부유세의 경우에도 내국 거주인이나 가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도 이들 납세의무자가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부채를 공제한 후 신고하도록 하였지만 성실신고 여부를 상호대사(cross-check)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조세당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필수 전제조건이었지만 과세자 주권(sovereign tax power) 문제 때문에 과세당국 간의 협조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허점을 활용하여 국적이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역외 소득 비신고 등 절세기법 활용(tax planning)이 성행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자동조세정보교환(AEOI) 프로그램 확산, 미 국제세의 FATCA 및 FBAR,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부유세 부과에 있어 가장 핵심문제는 부유세 부과가 갖는 저축억제라는 부작용, 그리고 시간적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

시행 등으로 금융자산의 소유 및 이에 따른 금융소득 발생 정보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가 강화되어 글로벌 부유세 부과를 위한 행정 인프라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특히 2015년 말에는 G20 국가들 간에 자동금융정보교환이 실시되어 해당국 조세당국은 자국 내국거주인의 국내외 금융자산 소유 현황을 보다 잘 파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 부동산자산 보유 현황 및 부동산평가제도 측면에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부유세 과세를 위한 세정여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문제는 부유세 부과가 갖는 저축억제라는 부작용, 그리고 시간적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극복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과세방식을 기술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부의 집중도 심화를 억제하는 정책대안으로서의 부유세 부과의 합목적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케티가 국가 간 최상위 1% 부유층의 부의 집중도 변화를 설명하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1910년에서 1970년 기간 중 급격히 부의 집중도가 하락한 나라들 그리고 1970년 이후에도 집중도가 증가하지 않은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부유세 시행국이었

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개인 또는 가구단위 소득 및 부의 집중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과 부(자산-부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납세신고서(tax return) 수준의 상세한 납부세금 정보가 포함된 조세패널자료가 장기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는 여전히 설문조사자료(survey)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있고, 아직 과세당국인 국세청 측의 종합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신고자료 같은 소득-자산 모집단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계청·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가계금융조사로 시작할 때 1만명 정도의 표본가구로부터 전년도 3월 말 시점의 자산 및 부채정보와 전년도 1년간의 소득 및 지출정보를 2차원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동일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로 시작하여 유용성이 상당히 기대되었으나 2012년 복지부문 설문조사서를 추가하면서 표본을 변경하여 패널자료로서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피케티 교수와 같이 상위 1%나 0.1% 같은 최고소득자나 최상위 자산가들에 대한 소득 및 부를 기초로 하여 불평등도를 기능하기에는 1만여 개의 설문조사(survey)자료로는 무리고, 또 납부한 조세의 항목과 납세액이 세분화되어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융 및 실물자산과 같은 저량변수(stock variable)에 대한 모집단 또

10) 2010년 3월 신설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는 미국인 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미국 IRS에 해당계좌정보를 제공하면 미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30%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인데, 미국은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 19개 국가와 상호교환방식의 조세 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고, 올해 3월 19일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타결하였음. <부록> 참조

는 표본 자료를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와 같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와 연결시켜 대표성 있는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주요 시점별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소득(income)과 부(wealth)를 2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러 원천의 데이터셋(datasets)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구하면서, 피케티처럼 최상위 자산계층까지 포함한 연구로는 노영훈·김현숙(2005)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C21C에 대한 개인적인 서평을 하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30대 초반부터 세금신고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실증분석 연구에 천착하여 얻은 연구 결과물로서 그의 근면함과 성실함에 기초한 연구노력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책 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단순화된 이론모형을 설정하면서 제약적인 가정하에서 수리적으로 도출 가능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학술지에 발표하는 연구논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반인 및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제학자가 택할 실증분석 방법론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생각이다. 그의 C21C에 대한 비판은 크게 국가 또는 지역별 집중도의 계산 방법론, 그리고 집중도 완화를 위한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의 핵심주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부의 집중도 심화문제를 40년, 100년, 200년에 걸친 장기적 기간 동안의 국가별자료로 제시하며 충분히 신중함을 보였다가 하는 것이 중론이다. 부의 집중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 측면에서도 글로벌 부유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형태의 자본에 대한 과세 또 그 외의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음으로 보아 여전히 해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케티가 불평등성 심화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자본의 집중화를 지적하였는데,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과연 현

“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과연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불평등 심화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생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자생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해법들을 갈구하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피케티의 C21C는 분명 큰 impact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2012)는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에서 걸으려는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불평등성의 심화에 따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은 포용적인(Inclusive) 정치·경제적 제도가 있느냐라는 주장 등이다. [kip](#)

〈참고문헌〉

- 노영훈,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2, 5월호.
- _____,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연구보고서12-07,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 _____, 「부유세로 불평등 해소: Piketty의 혁명 들불처럼」, 『한국일보』, 2014년 5월 27일 16면.
- Acemoglu, Daron and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

Robert Barro, *Getting it Right: Markets and Choices in a Free Society*, The MIT Press, 1997.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Press, 2014.

Thomas Piketty and Emmanuel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2003.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2008.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aris, 2011.

Chris Giles, "Data problems with Capital in the 21st Century," *Financial Times*, 2014

Waldenstrom, "Lifting All Boats?," *Lund Studies in Economic History* 51, Lund University, 2009

〈부록〉

1.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와 부자(Rich)의 구분, 소득과 부의 결합 분포(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의 특성: HNWI, highly-skewedness

고소득자는 소득이 많은 개인들을 말하며, 이때의 소득은 일정기간, 예를 들어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한 유량개념으로서 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economic position)을 측정하는 한 척도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연간소득을 버는 개인 또는 가구를 고소득자 또는 상위 소득가구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집단 소득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충실하다면 소득자 서열을 매긴 후 10분위, 100분위로 소득기준 계층을 만들어 순위에서 차지하는 상위 10%, 상위 1% 소득계층에 속한 개인이나 가구들로 정의할 수도 있다. 만일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매우 포괄적 소득(comprehensive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과세당국이 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포착한 과세소득 또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1% 또는 10% 고소득자 소득의 전체 소득 대비 상대비율 또는 납부소득세비율 등을 통해 소득 분포의 집중도나 납세부담을 기늴할 수 있다. 반면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특정 소득유형(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할 의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과세(exclusion)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이 고소득자 계층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한다면,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를 통한 최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집중도나 세부담 형평성 논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최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들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액의 세수비율을 통해 소득집중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등 소득원천(source of income)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편 가구(household)가 소유한 부(wealth)나 순자산(Net Worth)의 크기와 분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이용 가능한 실증자료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속칭 어느 나라에서 부잣집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기준은, 일정시점에서 소유한 자산의 평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들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에서도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통상 고액 순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고액 순자산가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net worth)’으로 적어도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개인을 말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가구 등 동산은 제외하고 투자목적용 순자산(investable asset)만으로 그 정도 부를 갖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1997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Capgemini & RBC의 “2013 World Wealth Report”를 보면 전 세계에 고액순자산가가 2013년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일년 사이에 9.2%나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의 373만명이, 아태지역에는 368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고액순자산가 1인당 평균이 북미, 아태(3.3백만달러), 유럽(3.1백만달러)의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국가별로는 미국(3.1백만달러) 독일 일본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 세계 71개국 총소득의 98%와 전 세계 주식시가총액(market cap)의 98%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지역-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 발표하고 있다. 시티그룹(Citibank & Knight-Frank)에서도 “Wealth Report: A Global Perspective on Prime Property

“
가구가 소유한 부나 순자산의 크기와 분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이용 가능한 실증자료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

and Wealth”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부의 규모나 분포는 민간 금융회사 이외에도 중앙정부 특히 국세당국이나 중앙은행도 업무의 특성상 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및 중앙은행 등은 일정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민간가계가 보유한 실물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을 (설문)조사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조사나 가계금융조사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청이나 중앙은행은 국부통계의 개인(및 비법인사업) 부문 대차대조표 잔액을 통해 민간부문 개인 순부(=자산-부채)의 총계치(aggregate value)를 추정하거나, 부문별 자금순환표 작성을 위해 부의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

과세당국도 자산소득, (실물자산) 보유과세, 상속·증여 등 이전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한 경제 내의 인별, 가구별 부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과세자료상의 이자·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으로부터 (원본 스톡인) 금융자산 소유분포를 계산 또는 추정하거나, 스웨덴 등 순부유세 부과국들은 과세당국에 신고된 부유세 신고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합토지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해당 부동산유형에 대해서 그 분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역추정 방법론(Estate

“
**한 경제 내에서 부의 분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자료나 통계를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연구 수행은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시간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동학연구,
 국제적 비교연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

Multiplier Method)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세당국의 상속세 신고자료는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deceased)들의 상속재산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들을 연초에 생존하고 있었던 부자들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된 표본(sample)인 것으로 가정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별 하위그룹들의 비중(weight)과 사망률(mortality rate)의 역수로 확대하여 생존하고 있는 부자들의 부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전술한 가계금융조사와 같은 설문조사상의 부의 분포는 통상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위 분포(upper tail)가 잘려져(truncate) 있어서, 최상위부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 위의 상속세 과세자료 역추정법으로 최상위 0.5% 또는 1%의 부자 정보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법론이 통상 사용된다.

먼저,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서 국가 간 상대비교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다.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 부(marketable wealth)를 계층별 또는 인별 수준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포착하고 있는 나라들은 순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들과 상

속·증여세 및 인지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로 추정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 불과하다.¹¹⁾ 따라서 부만을 놓고 볼 때 상위 몇 %의 부자가 일정기간 또는 생애기간 동안 한 국민경제 전체에서 몇 %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이 총세수에서 몇 %의 세부담을 하는지는 파악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다. 기껏해야 최상위 몇 명의 재벌가 소유주식가액이 몇 조라거나, 우리나라의 상위 몇 %의 땅 부자가 전국 토지가액의 몇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와 같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아 증권거래소 등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얼마 되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전국 토지가액이 얼마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얼마라는 통계치들은 존재하나 그 분포의 특이인 상위계층 집중도(예: top 1% share), 분위배율(예: interdecile ratio), 지니계수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집단 전수 또는 표본에 대한 미시자료들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한 경제 내에서 부의 분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자료나 통계를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연구 수행은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시간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동학연구(dynamics), 그리고 국제적 비교연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기술한 부유세의 신규 부과가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단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세정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67.8%인데 거주주택자산

11) 다만 부유세를 부과해 줌으로써(예, 스웨덴 등) 또는 상속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 부의 분포를 추계한 통계(예, 영국 국세청 국세통계) 및 연구자료는 존재함. 특히, 미국 및 영국에서는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한 간접추계방법으로, 그리고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에서는 인지세(stamp duty)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음. 또한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에 가깝게 개인소득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자본소득 및 자산소득을 통해 인별 자산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총량적인 차원에서는 국민경제계산을 통해 부문별 자산소유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있으나 인별 단위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이 36.3%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26.7% 정도이다. 결국 서베이 자료로 파악한 우리나라 민간가계의 부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인별 또는 가구별 소유현황 및 과세평가금액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야 한다. 주요 가계자산 중 토지는 인별 소유상황이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20년 가까이 주택은 9년여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어서 과세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들 부동산도 유형별로 시가 대비 과세가액의 비율인 평가율이 불균일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년 공시가격이 재고시되는 등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구성 비중은 높지 않지만 고가 서화 및 골동품 등에 대한 세원관리는 이들 자산의 소유권 현황 및 평가액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여전히 거래시장을 통한 시가파악이나 소유현황이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년에 이르지만 배우자나 자녀명의를 통한 분산소유가 일반화되어 있고, 금융자산의 소유실태 및 분포에 대한 모집단 정보도 미비한 상황이다. 내국거주인의 해외부동산 및 해외금융자산 소유 현황이 외환당국이나 국세청에 이미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각지대였는데,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이 자국민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또 국가 간 조세정보자료교환협정의 체결 등으로 과세당국에 보다 노출되게 되었다.

2. 피케티의 C21C 발간에 대한 서평 및 평가들

“피케티의 ‘21C 자본’은 작년 프랑스어로 출간되었고 올해 3월 영어로 출간되었다. 영문판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토론, 논란의 중심

“
**우리나라 민간가계의 부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인별 또는
 가구별 소유현황 및 과세평가금액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야 한다.**
 ”

에 서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오늘날의 최고부자(Super-rich)의 부유함이 근로소득이 아닌 대를 이어 내려온 유산 때문이라는 피케티의 의견에 동의한다. 반면, 한편에서는 피케티의 연구는 경제학적으로 고안된 정책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정책 제안일 뿐이며 이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케티는 경제학자와 독자들에게 많은 이슈를 던져 주었다.” (The Economist explains, “Thomas Piketty’s “Capital,” summarised in four paragraphs,” *The Economist*, May 4, 2014.)

“피케티는 최초로 세금 통계를 이용하여 지난 300년간의 유럽과 미국의 불평등을 측정하였다. 물론 통계의 처리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부(wealth)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다. 부의 집중에 대한 그의 예측은 단순히 자본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소리는 아니다. 한편으로 ‘바보 Piketty’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의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주장이 자본주의의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고 한다. 그는 왜 부의 집중을 축소시켜야 하는지를 그저 강하게 주장할 뿐, 왜 축소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며,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나 다른 목표들과의 상충관계(trade-offs)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실천목록(to-do-list)은 부자에

“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 사회는 영국의 일부 기득권층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였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

대한 과세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 즉, 피케티는 학문이 아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중하였으며,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있지만 행동을 위한 청사진으로서는 부족하다.” (The Economist, “A modern Marx,” *The economist printed edition*, May 3, 2014.)

“피케티의 책은 미국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가져왔다. Paul Krugman은 그의 책에 대해 ‘피케티의 주장은 대를 이어 부를 축적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리’라고 묘사하였다. 600p에 달하는 그의 책에서 그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과연 급진적인가? 사실, 별로 그러하지 않다. 프랑스에서 여전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케티는 그들과는 다르다. 책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서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조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Pascal-Emmanuel Gobry, “Thomas Piketty, a Not-So-Radical French Thinker,” *WSJ*, May 22, 2014.)

“피케티가 소득불평등의 급격한 악화문제, 특히 상위 소득과 하위소득계층간의 격차 심화를 지적했던 첫 번째 경제학자는 아니다. 부자들의 소득원천 중,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이 상당하며, 이 자본 또한 상당수 유산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야 하는가? 피케티의 의도는 이 질문이 상당

히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전, 서구 사회는 영국의 일부 기득권층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였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한편,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잇달아 피케티를 마르크스주의자라며 비난하고 있다.” (Paul Krugman, “The Piketty panic,” *NYTimes*, April 24, 2014.)

“피케티의 연구는 다양하고 수많은 논쟁을 만들고 있다. 마르크스가 19세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피케티도 자본의 수익(return)이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소득이 재투자되었을 때, 이 역시 경제성장보다 빠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자본가들이 점점 국가의 소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노동소득이 부당하게 ‘supermanagers’의 손에 흘러들어 간다는 점이다. 2050년 혹은 2100년, 세상은 누구의 손에 있을 것인가? 하고 피케티는 묻는다. 상인, 자본가, 경영자, 산유국 혹은 BOC(bank of China)?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든 간에 최대한 빨리 글로벌 부유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민주적인 자본주의는 푸틴, 시진핑과 같은 정실주의를 내세우는 권위적인 집단의 지배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James Pethokoukis, “The New Marxism,” *National Review*, March 24, 2014.)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굉장한 책을 썼다. 선견지명이 있는 독자라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경제학을 ‘역사, 사회과학, 정치, 인류학의 하위 학문’이라 부른다. 그 결과 방대한 역사적 범위를 아우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물론, 그의 연구에도 약점은 있다. 그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Martin Wolf,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Financial*

Times, April 15, 2014.)

“지난주 있었던 토론토의 한 컨퍼런스에서 매 세션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피케티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신드롬은 1970년대의 Friedman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 당시 논쟁의 대상이었던 인플레이션은 현재 금권정치와 불평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불평등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그가 해법으로 말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80%로 인상

하지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Will Hutton, “Capitalism simply isn’t working and here are the reasons why,” *The guardian*, April 12, 2014.)

3. 최근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등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당국 정보교환제도들

〈부표 1〉 FBAR와 FATCA의 기본사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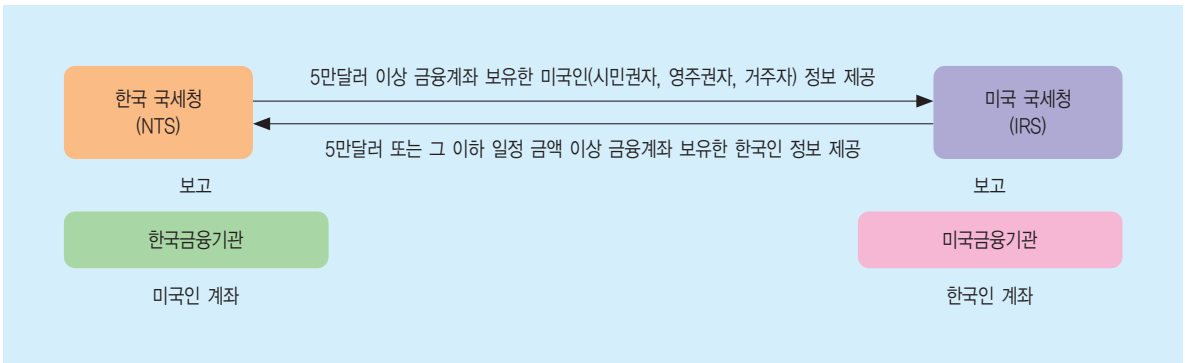
	FBAR에 의한 금융자산 신고	FATCA에 의한 금융자산 신고
신고의무자	모든 미국인(Each US Person: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법인, 파트너십, 신탁 등)	① IRS와 FFIA를 맺은 해외금융기관(FFI) ②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 비거주 외국인 (모두 개인)
신고기준(threshold) 금액	연중 1만달러 이상	(연말금액/연중최고액) 싱글: 5만달러 / 7만 5천달러 부부합산: 10만달러 / 15만달러
주요 신고 정보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해외금융자산의 최고액
신고 방식	개별적인 전자신고	소득세 신고시 첨부(Form 8938)
양식 및 신고처	e-file 114 양식 (BSA E-Filing System) /재무부	① FFI: IRS에 정기적으로 보고 ② 신고의무 있는 개인: Form 8938
신고대상 금융계좌	- 요구불 또는 정기예금, 당좌예금,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계좌 등 은행계좌 -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증권파생상품 계좌 등 - 특정 펀드에 대한 일정지분을 보유하는 금융계좌	-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예금, 수탁계좌, 수익증권, 현금가치 보험 및 연금보험 - 연금계약과 예금계좌 및 집합투자증권의 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등
신고 날짜 마감일	6월 30일	① FFI: 정기적 또는 IRS의 요청시 ② 신고의무 개인: 소득세 신고와 동일(4월 15일)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 있는 자산	신고해야 함	신고의무 없음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은 해외 주식	신고의무 없음	신고해야 함
과태료	과실 미신고: 500달러 반복적 미신고: 5만달러 고의성 없는 미신고: 1만달러 고의적 미신고: 10만달러 또는 계좌잔고의 50%	개인에 대해, 미신고/허위신고: 1만달러 과소신고: 과소납부 금액의 40%를 가산세
형사상 처벌	고의적인 경우에만 25만~50만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개인에 대해, 형사 처벌 추가 가능
해외 부동산, 보석, 외국지폐, 골동품 등	신고의무 없음	신고의무 없음

〈부표 2〉 미국과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제도 명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시행시기	2011년	1972년 ¹⁾
기준금액	10억원 이상	1만달러 이상 (약 1천만원 이상)
기준금액 산출방법	매월 월말 기준 잔고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 시기	익년 6월 1일~30일	익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4~10%	과실미신고: 500달러 고의성 없는 미신고: 1만달러 고의적 미신고: 10만달러 또는 계좌잔고의 50%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50억원 초과시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	고의적인 경우에만 25만달러~50만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주: 1) FBAR는 1972년에 31 C.F.R. Section 103.24 (1972)로 제정되었고, 1977년부터 소득세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행정상 협력의무-보고사항이 되었음

[부도 1] FATCA 정보교환 개념도 (Model I)



주: 시행일은 2015년 9월. 시행범위는 2013년 말 금융계좌 잔고와 2014년 말 금융계좌 잔고